

문서번호	의회사무과-7648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4. 12. 19.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정책지원팀장	의회사무과장	의장	결 재
김정환	원경애	윤병일	장순관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정순			
협조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고종예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



예산군의회
(정책지원팀)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

□ 연구모임 개요

- 모임 명칭 :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 연구 목적 : 예산군 현실에 맞는 임신·출생·육아 정책을 개발하고 포괄적 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모임 구성

계	대표	간사	위원		
5명	이정순 의원	이길원 의원	강선구 의원	심완예 의원	장순관 의원

- 활동 기간 : 2024. 5. 13 ~ 12. 17 (7개월)

일자	참석인원	활동내역	비고
2024.05.13.(화)	13명 (의원 4) (공무원 9)	[발족식] 간사선임, 예산군 돌봄 및 육아 현황 보고 청취 향후 추진일정 협의	
2024.08.29.(목)	-	[연구용역 계약체결] 계약상대방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기간 : 24.08.29~11.27.(90일간) 계약액 : 19,800천원	
2024.09.05.(목)	5명(의원)	간담회(연구용역 추진 협의)	
2024.09.27.(금)	13명 (의원 4) (기타 10)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내용 : 연구용역 추진 및 세부계획 청취 연구용역 추진 방향 제시	
2024.10.21.(월)	대표의원 (읍·면 협조)	[설문조사] 대상 : 560명(읍·면 주민) 항목 : 99개 항목	7일간
2024.11.04.(월)	대표의원	설문조사 입력 및 결과 분석	14일간
2024.11.15.(금)	16명	FGI(지역주민 및 대표 의원, 용역사)	
2024.11.20.(수)	-	연구용역 (기간)변경 계약	20일 연장
2024.12.02.(월)	12명 (의원 4) (기타 8)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연구용역 추진상황 청취 연구용역 진행에 대한 연구의원 의견 제시 (보고서 통계오류 및 기타 추가 검토 제시)	
2024.12.10.(화)	17명 (의원 4) (기타 13)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토, 수정사항 반영 협의	

□ 연구용역 추진

- 용역명 :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연구용역」
- 용역목적 :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하여 예산군 현실에 맞는 임신·출생·육아 정책을 개발하고 포괄적 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용역기간 : 2024. 8. 29 ~ 12. 17 (110일간)

계약 체결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2024.08.29.(목)	2024.09.27.(금)	2024.12.02.(월)	2024.12.10.(화)

- 용역주관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일천구백팔십만원정(₩19,800,000)
- 용역추진 세부사항

선행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예산군 인구통계학적 지표
기초 자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친화 개념 ▸ 육아 친화 도시 개념 ▸ 육아 친화 구성 요소 ▸ 육아 친화 명품도시 국내외 사례 ▸ 스마트시티 리빙랩 국내외 사례 ▸ SWOT 분석
연구 방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과업 내용 및 방법 ▸ 연구 범위 ▸ 예산군 요구사항 반영 ▸ 자료 분석
연구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 검토 결과 ▸ 설문지 분석 결과 ▸ FGI 결과
모델 제시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제시 ▸ 종합 제언

○ 연구 결과 주요내용

■ SWOT 분석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제공을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 중- 보건소 신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여성친화도시 중기계획 수립 완료	전체 인구 중 32.9%를 차지하는 고령인구(2021년 기준)- 공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 및 공간 부족-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 발생
기회(Opportunities)	SW전략	WO전략
건강도시 인증 등 보건에 관한 관심도 및 정책적 중요도 증대- 아동친화도시 등 공적 돌봄과 관련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예고	생애주기별 계층에 특화된 건강 증진 및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복지와 의료) 및 운영을 통해 만족도 제공
위협(Threats)	ST전략	WT전략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가중- 코로나19 등과 같이 국제적 전염병 등의 발병 가능성 증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지역 성장 저하	지역여건 및 고령화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정책 추진WT전략	주변 지역 및 광역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 설문조사 분석

▶ 기초자료

- 1) 성별 : 여성 300명(59.1%), 남성 208명(40.9%)
- 2) 나이 : 전체 평균 연령은 39.89세, 여성 38.65세, 남성 41.69세
거주지별 평균연령은 신양면 62.25세 삽교읍 36.50세
- 3) 자녀 수 : 2자녀 39.4%(200명), 1자녀 26.0%(132명), 자녀 없음 23%(117명)
- 4) 거주지 : 예산읍 최다 28.1%(143명), 대술면 최소 1.2%(6명)
- 5) 거주기간 : 21년 이상 거주 29.7%(151명)

▶ 만족도 비교표

12개 양육 관련 영역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양면	오가면
저출생 및 육아친화			▽		▲							
철학, 가치, 태도			▽		▲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						▲	▽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						▽			▽		
물리적 환경					▲			▽				
인적 네트워크	▲							▽				
공원/녹지 공간					▲			▽				
여가/문화 서비스	▲									▽		
교통/보행 네트워크	▲									▽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							▽	▽			
행정 서비스 인프라	▲		▽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		▽				

▲ :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 ▽: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

■ 정책 모델 제시(안)

1	예산군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2	예산군 육아지원 상담센터(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연계)	
3	예산군 육아마을 돌봄공동체	
4	예산군 육아친화마을 조성	
5	예산형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6	신혼 및 육아 공무원 지원	
7	신혼 희망타운(공공임대주택) 활성화	
8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9	산업체 근무 직원 육아 지원 정책	
10	스마트시티 리빙랩(Living Lap) 육아 지원 정책 추진	

■ 자치법규(조례) 제정(안)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킴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홍보
4.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대표자
4.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검토의견
 - 연구용역 최종결과 예산군 기본 통계 수치 오류 여부 확인 필요
 - 편중된 샘플에 의한 설문으로 결과치 활용 부적합 요인 발생
 - 제시 정책 모델 중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제시 조례안은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활용방안
 - 추후 조례안 제·개정, 예산 편성 참고 자료로 활용
 -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모델에 대한 장기적 검토

□ 향후 계획

-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연구 활동보고서 제출) 규정에 의거 의장 보고